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복 범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범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안 별표4의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나. 감경규정 용어 정비 (안 별표4의2)

단순과실로 인한 과징금 감경 규정의 삭제로 과징금 산정 시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조정을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으로 용어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중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30. ~ 6.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2호 본문 중 “고의·과실”을 “조사협조 및 위반행위 성격”으로 하고, 제2호의 나목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제2호 다목 중 “고의·과실”을 “조사협조”로, 같은 목 본문 중 “고의·과실”을 “조사협조 여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제4항 관련)		[별표 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 제4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가맹본부의 <u>고의·과실</u>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 ----- ----- ----- ----- ----- <u>조사협조 및 위반행위 성격</u>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u>100분의 50</u> 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 ----- <u>100분의100</u> ----- ----- ----- -----.		
다. 가맹본부의 <u>고의·과실</u> 등에		다. 가맹본부의 <u>조사협조</u> 등에 따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u>고의·과실</u>,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생략)	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 -----<u>조사협조</u> <u>여부</u>,----- ----- ----- ----- ----- ----- ----- 라.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94